

법과대학 대학원 규정

제정 1997. 9. 1.
개정 1998. 3. 19.
개정 2001. 5. 1.
개정 2010. 3. 30.
개정 2011. 6. 14.
개정 2013. 9. 30.
개정 2014. 5. 21.
개정 2015. 10. 1.
개정 2016. 12. 15.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법과대학 대학원의 시험을 개선하고 논문 지도 및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특칙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부 전공분야'는 현행 8개 전공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소분류 전공분야를 말한다. <2001. 5. 1 개정>
2. '예비심사'는 작성된 논문을 2인의 전공교수가 심사하여 본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본심사'는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을 정식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공시험 출제 분야)

- ① 석사과정 입학시험은 8개 전공분야에서 출제한다. 다만, 세부 전공분야에서 출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② 논문제출자격시험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전공시험에 있어서는 세부 전공분야에서 출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시험 지원자는 응시 원서에 응시할 세부 전공분야를 기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당해 세부 전공분야에서 출제한다.

제3조의2(박사과정 입학시험)

- ① 박사과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석사논문지도교수 또는 전공분야 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 10. 1 개정>

제4조(전공별 수강 학점 기준)

-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해당 전공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 또는 해당 세부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9학점 이상을 수강·취득하여야 한다. <2001. 5. 1 개정>

- ② 삭제 <2014. 5. 21>
- ③ 박사과정의 학생은 해당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해당 세부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을 수강·취득하여야 한다. <2001. 5. 1 개정>
- ④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해당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30학점 이상 또는 해당 세부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수강·취득하여야 한다. <2011. 6. 14 신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해당 분야 전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는 요건 불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분야 전공자로 인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 단서의 신청에 대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가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 전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의2(성적 평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성적 평가에 있어서 각 과정당 수강생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A학점을 각 과정당 70% 이상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998. 3. 19 신설>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 ①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하여야 하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법과대학의 교원이어야 한다. <2016. 12. 15 신설>
- ②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입학 후 3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 학기를 경과한 후에도 원장에게 보고 후 변경할 수 있다. <2016. 12. 15 신설>
- ③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명당 교원 1명으로 한다. <2016. 12. 15 신설>

제6조(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 ① 제5조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명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2016. 12. 15 신설>
 - 1.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016. 12. 15 신설>
 - 2.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2016. 12. 15 신설>
 -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6. 12. 15 신설>
- ②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신청은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의 응시 전에 하여야 하며,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신청 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다. <2016. 12. 15 신설>

제7조(논문연구 학점의 인정)

논문연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별지 양식(1)에 따라 작성한 논문연구보고서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석사논문제출동의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별지 양식(2)에 따라 작성한 논문제출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박사논문심사)

- ① 박사논문 제출자는 예비심사용 논문을 당해 학기 수업주수 1/2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논문을 논문지도교수와 학내 동일 또는 유사 전공교수 1인이 예비심사를 한다.
- ③ 예비심사에 통과된 박사논문을 본심사 대상 논문으로 한다.
- ④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다음 학기에 한다.
- ⑤ 박사학위논문은 본심사를 하는 학기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인정 요건)

- ① 석·박사통합과정 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1. 6. 14 신설>
- ② 10인 내외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논문 발표를 심사하여 박사과정 인정 여부를 정한다. <2011. 6. 14 신설>

제11조(박사학위 논문 보고회 개최)

- ① 박사학위 논문 최종심을 통과한 자는 박사학위 논문 보고회에서 당해 논문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3. 9.30. 신설>
- ② 본 대학원의 교수는 전공과 무관하게 보고회에 참여하여 질문을 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2013. 9. 30. 신설>
- ③ 보고회에는 본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도 참석할 수 있다. <2013. 9. 30. 신설>
- ④ 보고회는 학위수여식 행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최한다. <2013. 9. 30. 신설>

제12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 한 세부적 사항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개정)

- ① 이 규정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 ② 학장은 이 규정의 개정을 교수회의에 보고한 뒤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전기(201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0.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